

- 제6기(2015~2018년) -

구미시 지역보건의료제책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4. 10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근거

-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기(2015~2018년)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자 제안 함.

2. 제안사유

-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,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구분	구미보건소	선산보건소
개별사업	○ 건강한 삶 유지기(성인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누리기(노인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나누기(취약계층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다지기(아동·청소년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준비기(임산부·영유아 건강관리) ○ 건강한 삶 알리기(통합건강증진사업홍보) ○ 건강검진사업 ○ 출산장려사업 ○ 암 관리사업 ○ 정신보건사업 ○ 의료비지원사업 ○ 진료 및 검사 ○ 의·약무 관리사업 ○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○ 건강도시사업	○ 성인기 건강플러스사업 ○ 노년기 건강플러스사업 ○ 취약계층 건강플러스사업 ○ 아동·청소년 건강플러스사업 ○ 임산부·영유아 건강플러스사업 ○ 건강검진사업 ○ 모자보건사업 ○ 암 관리사업 ○ 정신보건사업 ○ 의료비지원사업 ○ 진료사업 ○ 각종 실험 및 검사 ○ 의·약무 관리사업 ○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

4. 참고사항

- 심 의 :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(2014. 9. 4.)
- 주민공고 : 의견제출 無(2014.9.15.~9.29.)

- 제6기(2015~2018년) -

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

구 미 시
(구미·선산보건소)

『건강한 노화를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구미』

- 생활환경의 변화, 저출산 및 고령화, 평균수명 연장, 신종 감염병의 발생 등 새로운 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, 보건의료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역할이 증대 됨.
- 이에 구미보건소는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, 주민의견조사 결과 건강향상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이 선정 되었으며 추진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.
- 추진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
 -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
 - 성인건강관리, 노인건강관리, 아동·청소년건강관리, 임산부·영유아 건강관리,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, 출산장려사업, 모자보건사업, 암관리사업, 건강검진사업 등을 통한 생활터별,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서비스로 주민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,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늦춰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함.
 -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, 취약계층 건강관리, 의료비지원사업 등 건강수준과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공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수준저하를 막기 위한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사회경제적·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함.

- 감염병예방관리사업, 건강도시사업, 의·약물관리사업을 통한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종 감염병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, 감염병의 사전예방 및 홍보, 결핵환자 관리, 예방접종을 향상 등으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, 사업장 등 생활터 중심의 건강한 일터 인증과 모든 영역에 건강개념을 도입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며,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불법 의료행위, 무자격자의 시술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 효과적인 의·약물관리로 시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○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

- 의료전달체계 구축
어르신, 저소득층, 외국인(다문화가족)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, 한방 순회진료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, 소득 수준별 건강격차를 줄여 나가고자 하며, 보건소의 접근성 확보와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- 건강협업체계 활성화
지역 내 민간기관과 부문별 협력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서비스를 연계·제공함으로써 통합 건강망 구축을 통한 지역보건 의료자원 협력 및 보건의료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함.

○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

- 보건기관 역량강화
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력, 시설 등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보건기관의 조직 안정화를 통한 보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.

【구미보건소】

-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

○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

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단위사업별로 시행하던 건강증진사업을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생활터별·생애주기별·질환군별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고,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체계적·형평적 수행과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• 건강한 삶 유지기(성인 건강관리)

건강문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성인기가 2순위로 조사되고, 성인기의 필요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가 1순위로 조사됨에 따라 전체인구의 75.1%에 해당하는 성인기의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관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함.

• 건강한 삶 누리기(노인 건강관리)

노인건강문제 중 가장 큰 사회·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프로그램 운영, 치매노인 등록관리, 치매치료비지원, 치매가족관리, 사회적 치매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사회 전반적인 치매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.

• 건강한 삶 나누기(취약계층 건강관리)

취약계층에 대해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,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지지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• 건강한 삶 다지기(아동·청소년 건강관리)

아동·청소년기는 집단교육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지식 및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, 예방이나 조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리하여 건강수명연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, 학교 및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아동·청소년기의 건강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- **건강한 삶 준비기(임산부 · 영유아 건강관리)**

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, 추후관리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,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을 영양플러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적절한 영양관리와 영양교육, 의식개선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함.

- **건강한 삶 알리기(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)**

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대사증후군 인지율이 38.1%로 나타나고,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인지율이 13.7%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건강한 환경조성 및 캠페인 전개, 각종 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범시민 홍보로 지역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 및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여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실천율을 향상시키고자 함.

- **건강검진사업**

생애전환기인 만 40세와 만 66세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대별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, 개인별 생활습관 등을 평가한 후 개선 처방을 제시하는 맞춤형 건강진단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, 의료급여수급권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함.

- **출산장려사업**

2012년 구미시 합계출산율은 1.51명(전국 1.9명)으로 2009년 1.21명 이후로 증가 추세이나 OECD 평균 1.7명에 비해 여전히 낮으므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출산장려사업과 영·유아 건강돌봄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- **암 관리사업**

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이며, 우리시 사망원인도 1위로서 전국에서 연간 약 22만여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여 사회·경제적으로 큰

손실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, 의학적 관점에서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암 발생인구의 약 1/3은 완치가 가능하므로 암 조기 검진율을 향상시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함.

○ 정신보건사업

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및 치료하고,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역사회 중심 재활·지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발을 방지하며, 사회복귀 및 참여 기회 증진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정신 질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해소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○ 의료비지원사업

치매치료관리비지원,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, 노인의치지원 및 사후관리, 암 환자 의료비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·경제적,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○ 진료 및 검사

보건소내소 환자의 1차 진료와 건강진단결과서, 일반건강검진 등의 증명 발급 및 각종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○ 의·약물관리사업

의·약업소 및 의료유사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·점검과 자율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의·약 단체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,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우수 의약품 공급 및 약물 오·남용을 예방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구급차의 적정관리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.

○ 감염병 예방관리사업

결핵, 한센병, 에이즈 등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강화와 지역 병·의원과 연계하여 환자 발견 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등록

관리를 통하여 2차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며, 감염병 퇴치 및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신고·감시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며,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지역 내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, 감염병 예방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인 위생관리수칙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○ 건강도시사업

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제고하는 등 건강도시사업을 실천하고, 전국 최초로 시행한 「건강한 일터(Navi) 인증제」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명품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함.

【선산보건소】

○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

단위사업별로 제공되던 건강증진사업을 생활터별,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·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, 주민 요구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늦추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함.

• 성인기 건강플러스사업

성인기의 심뇌혈관질환자들에게 적절한 투약, 식이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적절한 합병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, 그 예방적 조치로 영양·신체활동·금연·절주 등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건강 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• 노년기 건강플러스사업

노년기의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,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, 치매예방, 조기검진, 환자 등록 관리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함.

- **취약계층 건강플러스사업**

취약계층의 건강문제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, 장애인에게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의 자립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함.

- **아동·청소년 건강플러스사업**

아동·청소년기 건강관리에 필요한 구강보건사업 및 건강행태개선 사업을 특성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건강관리 효과를 높이고 건강수명 연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.

- **임산부·영유아 건강플러스사업**

임신부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분만과 건강한 아기 출산을 도모하고, 출산 후 건강관리와 상담을 통해 산모의 건강을 도모하며, 영·유아 양육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고자 함.

- **건강검진사업**

생애전환기 주민을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성별·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도입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·치료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- **모자보건사업**

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(난임부부지원, 청소년산모지원, 임신부의 날 행사)으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,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차세대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함.

- **암 관리사업**

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암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암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, 암 조기검진율을 연차적으로 증가시켜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함.

○ 정신보건사업

주민교육 및 홍보 강화로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주민의 편견을 해소하고, 정신보건관련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로 치료·재활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도모하여 환자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○ 의료비지원사업

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(치매치료관리비,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, 노인요양 시설비지원, 암 환자 의료비지원)을 통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함.

○ 진료사업

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고, 주민건강증진 및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함.

○ 각종 실험 및 검사

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실험 및 검사를 통해 건강 위해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.

○ 의·약물관리사업

의·약무 대상업소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·점검을 통하여 규정 위반 사례 및 불법 행위율을 낮추고,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유통시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함.

○ 감염병 예방관리사업

• 급성 감염병관리

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예방접종 및 감염병 신고·감시체계를 강화하고, 감염병 발생시 즉각적인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로 지역 내에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감염병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,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• 만성 감염병관리

결핵, 한센병, 에이즈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와 지역 내

병·의원과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환자 발견 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환자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 내의 2차 전파를 차단하고자 함.

4

연도별 예산 추정현황

【구미보건소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
인건비	3,713	3,899	4,085	4,271	4,457
사업비	8,781	9,220	9,659	10,098	10,537
시설/장비 보강비	162	65	3224	72	87
기타	634	700	767	833	900
계	13,290	13,884	17,735	15,274	15,981

【선산보건소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
인건비	3,055	3,115	3,175	3,235	3,295
사업비	2,304	2,436	2,534	2,657	2,772
시설/장비 보강비	526	70	90	659	20
기타	990	1,520	1,010	1,020	1,030
계	6,875	7,141	6,809	7,571	7,117

※ 별첨 : 구미시 제6기(2015~2018년)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

【참 고 자 료】

□ 지역보건법

제3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역주민,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·군·구의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·군·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)

-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보건의료수요 추정
 2.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
 3. 인력·조직·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 4. 보건\의료의 전달체계
 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, 수립 방법·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역보건법 시행령

제5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)

-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